

표창대상자 추천 제한기간

1. 재표창 금지기간 : 수여일부터 추천일 기준

받으려는 표창	재표창 금지기간
소방청장	소방청장 표창을 받은 후 1년 이내
소방기관장	해당 소방기관장 표창을 받은 후 6개월 이내

비고

- 1. 제안제도·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, 퇴직자 표창의 경우 재표창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2. 정부포상 수여자(모범공무원 포함)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방청장 표창을 받을 수 없다.
- 3. 단체표창의 경우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다. 다만 「정부업무 평가기본법」 등에 따른 평가 또는 대회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